의 안 번 호

1580

# [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]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1. 8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3.(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최정문)

#### 가. 제안이유

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, 책무,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)
- O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규정(안 제7조)

다. 근거법규: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계화)

- O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,
- O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으며, 구정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